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항목 추가〉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40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4. 18.
3. 회 부 일 : 2025.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항목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실태’,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u>하도급거래에</u>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포함한 하도급거래에</u> ----- ----- -----.
<신설>	1. 서면 하도급계약서 발급 및 <u>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u>
<신설>	2.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실태
<신설>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실태
<신설>	4. 하도급대금 지급 및 대금지급 보증 실태
<신설>	5.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2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999년부터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통상 연중 실시하여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올해 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제조업 7천, 용역업 2천5백, 건설업 500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제조업 6만 3천, 용역업 2만2천5백, 건설업 4천5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시작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 수요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을 결정하는데, 올해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과 지급 기일 현황, 기술자료의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의 개선도 등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함.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차원의 지원 및 인센티브에 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였음.

-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조사항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따라 실제 납품대금의 조정 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처럼 조사항목을 법률에 열거하면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유사한 서면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³⁾,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⁴⁾ 등

-
- 1)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 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2)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3)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4)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른 입법례에서도 유연한 대응을 위해 조사항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이후 2024년 서면실태조사부터 연동제 관련 항목을 최초로 포함하였고, 2025년 서면실태조사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의 이행 여부도 포함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9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